

農 民 的 農 地 稅 負 擔 現 況 及 問 題 點

金 基 成

責 任 研 究 員, 第 1 研 究 委 員 室

- I. 序 言
- II. 農地稅의 租稅體系 및 地方財政上 位置와 稅制上의 特徵
- III. 農民의 農地稅負擔과 公共惠澤의 農民歸屬
- IV. 農民의 不滿과 稅制上의 問題點
- V. 問題點 改善方向

I. 序 言

지난 70년대 초부터 급속히 향상되어 온 韓國 農民의 所得水準은 1979년 말 현재 農家戶當 2, 208. 3千원, 家口員 1人當 416. 6千원에 달하여, 戶當 200千원 (1975년 不變價格基準으로 500千원) 水準을 下廻하던 60년대의 어려운 貧困水準¹은 넘어섰다. 그러나 지난 10년동안 農民의 離·脫農 現象은 계속되어 왔으며 農村에 남아 있는 農民에게는 所得의 低位性 및 分配의 不衡平性 등과 관련하여 離農을 促進할 不滿要因이 아직도 殘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本稿는 그와 같은 離·脫農 및 기타 農民不滿의 主要原因의 하나가 「農民의 都市民에 대한, 그리고 小(貧)農의 大(富)農에 대한 所得分配의 不衡平性에 의한 相對的 剝奪感」에 있는 것으로 보고, 租稅가 지니는 所得의 再分配 및 負擔의 衡平化 機能을 勘案하여 農民의 可處分 所得에 영향을 주는² 農地稅 賦課에 있어서의 當面問題

들을 分析, 考察코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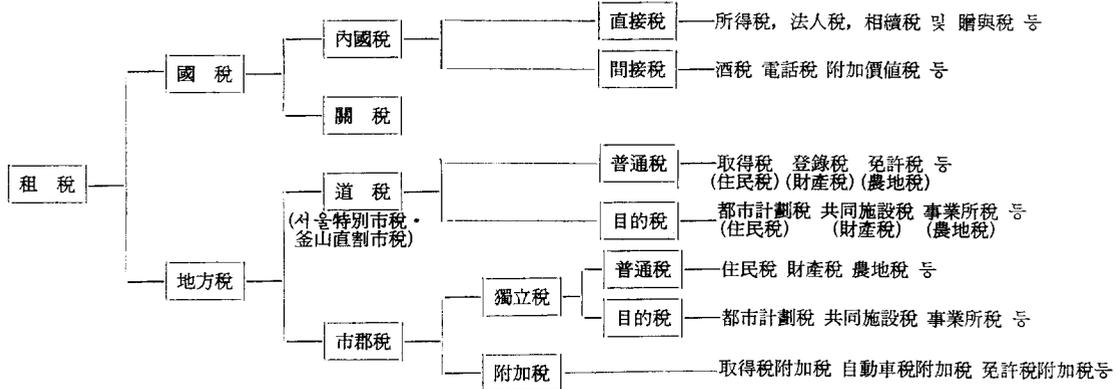
현행 稅法上 農地稅는 甲類稅와 乙類稅를 通稱하고 있으나 이 분석에서는 農民의 絶對多數가 甲類稅 對象作物인 벼 農事에 종사하고 있으며, 農地稅를 내는 農家의 86%가 甲類稅 納付者이고, 徵收稅額面에 있어서도 83~87%(1975~1978)가 甲類稅인 점을 감안하여 甲類 農地稅 문제를 중심으로, 특히 전체 耕種 農家의 87%(1979)이상을 점하는 耕地規模 1. 5ha 이하의 農家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免稅點의 適正化 方案의 모색 등에 비중을 두고자 한다.

II. 農地稅의 租稅體系 및 地方 財政上 位置와 稅制上의 특징

1. 租稅體系上 農地稅의 位置

租稅體系上 農地稅는, (1) 課稅主體를 기준으로 하여 國稅와 對位 概念으로서, 地方稅法에 의거 地方自治團體가 賦課하는 地方稅에 속하며³, 地方稅 중에서도 市郡에서 부과하는 市郡稅이다. (2) 國稅나 道稅에 부수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市郡이 독립적으로 부과하는 獨立稅이다. (3) 都市計劃이나 教育事業 등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圖 1 租稅體系(1980년 현재)



으로 農土에 農事를 짓는 경우에 부과하는 普通稅 이다(圖1). (4) 納稅者와 擔稅者가 일치하는가 에 따라서 間接稅의 對位概念인 直接稅에 속한다.

2. 地方財政上 農地稅의 位置

地方自治團體의 總收入 豫算規模에 대한 農地稅의 比重은 全國單位로 2.55%(1978)이며, 서울과 釜山을 제외한 各道(市郡)單位로는 3.76%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地方財政의 개념을 狹義의 一般會計豫算 規模로 보면, 總收入 1,261,609百萬元 중 地方稅 收入額이 445,734百萬元이고,

그중 農地稅收入은 44,318百萬元(甲類稅는 36,804百萬元 : 83%)으로서 一般會計豫算(地方財政)의 農地稅 依存率은 3.51%, 稅收中 農地稅의 比重은 9.9%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比率은 서울과 釜山을 제외할 경우 각각 5.0%와 23.0%에 달하며, 全國의 郡單位만으로는 稅收中 農地稅의 比重은 61.8%에 달하여 農地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크다(表 1). 그러나 地方財政上 農地稅의 比重은 1976년의 6.6%에서 1978년에는 4.5%로 약 2.1%포인트 減少하였으며, 稅收中 農地稅의 比重도 3.9%포인트나 減少함으로써 地方

表 1 地方財政의 農地稅 依存率¹⁾, 1978

	全 國 計	서 울	釜 山 및 道			郡 計
			計	釜 山	道(市+郡)	
總 財 政 規 模 (A)	1,736,090百萬元	462,715	1,273,376	103,628	1,169,746	—
그 中 一 般 計 (B)	1,261,690百萬元	298,869	962,821	71,567	891,254	—
地 方 稅 收 入 (C)	445,734百萬元	206,097	239,636	45,606	194,030	69,002
그 中 農 地 稅 ²⁾ (D)	44,317百萬元	124	44,176	196	43,997	42,658
總 財 政 中 農 地 稅 比 率 (D/A)	2.55%	0.03	3.47	0.19	3.76	—
一 般 會 計 的 農 地 稅 依 存 率 (D/B)	3.51%	0.04	4.60	0.27	4.93	—
稅 收 中 農 地 稅 比 率 (D/C)	9.9%	0.06	18.4	0.43	22.7	61.8
總 財 政 中 一 般 會 計 (B/A)	72.7%	64.6	75.6	69.1	76.2	—
一 般 會 計 的 稅 收 依 存 率 (C/B)	35.3%	68.9	24.9	63.7	21.8	—
財 政 自 立 度 ³⁾	58.2%	96.2	46.4	91.1	42.9	—

1) 決算額 基準.

2) 서울, 釜山을 제외한 市 農地稅 收入額은 1,363百萬元, 全國의 郡 農地稅 收入額은 42,658百萬元임.

3) 狹義의 自立度 概念인 $\frac{\text{地方稅} + \text{稅外收入}}{\text{一般會計規模}} \times 100$ 에 의한 自立度임.

資料 : 內務部, 「地方財政年鑑」, 1979.

—, 「地方稅年鑑」, 1979.

表 2 地方財政, 地方稅收 및 農地稅의 推移 (賦課額¹⁾ 基準)

區 分 年 度	地方財政 ²⁾ (A)	稅收(B)	農 地 稅(C)	比 率			
				甲類農地稅(D)	C/A	C/B	D/C
1971	百萬元 160,237	百萬元 39,811	百萬元 4,522	百萬元 3,734	% 2.8	% 11.4	% 82.6
1975	348,876	169,042	21,025	17,525	6.0	12.4	83.4
1976	483,904	233,731	31,785	27,515	6.6	13.6	86.7
1977	662,265	349,448	36,096	30,352	5.5	10.3	84.1
1978	988,032	460,341	44,529	36,804	4.5	9.7	82.7
78/71	616.6%	1,156.3	984.7	985.6	—	—	—

1) 農地稅 賦課額 中 徵收實績은 1965~78년 사이에 98.4%~99.6%였음.

2) 一般會計歲入額 基準임.

資料 : 內務部, 「地方財政年鑑」, 1979.

—, 「地方稅統計」, 1976, 77, 78, 79.

財政에서 접하는 農地稅의 역할은 감소하는 반면에 農地稅 이외의 稅收와 稅外收入의 比重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表 2).

3. 稅制上 農地稅의 特徵

첫째, 農地稅는 地方稅法(197條—233條)의 규정에 의거 原則上 農地를 客體로 하여 그곳에서 얻은 收益을 課標로 그 收益을 얻는 者에게 賦課하는 收益稅이며,

둘째, 農地稅 中 甲類稅는 粗收入을 課標로 하기 때문에 收買價格이나 生産費 등 價格要因에 대해서도 課稅하는 結果가 되어 所得稅의 性格과 物品稅의 性格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그러나 쌀이라는 必需品을 生産하는 農地에 부과하는 農地稅에 物品稅의 性格을 부여함이 타당한가에 대하여는 異論이 없지 않다.

셋째, 農地稅는 그 稅額算出에 적용되는 稅率이 累進的이며 그 累進性은 課標額 階層別로 遞增的인 超過累進稅이다.

네째, 農地稅는 農民이 부담하는 대표적인 所得稅로서 都市勤勞者가 부담하는 綜合所得稅와 對位關係에 있어 일반적으로 都農間 稅負擔 비교의 基準으로 兩者의 比較值를 이용하게 된다. 단, 그 비교의 현실적 妥當性 與否에 관해서는

아직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⁴, 현 단계에서 本稿는 일단 肯定的 側面에서 보기로 한다.

다섯째, 農地稅는 甲類 農地稅와 乙類 農地稅로 구분되어 있어 後述하는 바와 같이 兩者는 課標稅率, 基礎控除額 및 納付方法 등에 있어서 현저히 다르며 따라서 課稅의 衡平性 問題가 甲 乙類 農地稅 間에도 제기되고 있다.

Ⅲ. 農民의 農地稅負擔과 公共惠澤의 農民歸屬

1. 農地稅 및 諸稅公課金 負擔의 現況과 推移

가. 農民의 農地稅 負擔

1971년 農家 戶當 平均 農地稅 負擔額은 1,822 원으로서 戶當 農業所得 291,909원에 대한 農地稅 負擔稅率은 0.62%였는데 그후 계속 증가하여 1978년에는 1.47%, 1979년에는 1.83%에 달하였다.

農地稅 負擔額의 實質伸張率은 1975년 不變價格 基準으로 1979년에 197%에 달했고, 家口員 1人當 農地稅 負擔額은 1971년의 309원에서 1979년에는 5,378원으로 늘었으며 그 實質增加率은 1975~79년에 110.3%였다(表 3).

農地稅 中 甲類 農地稅의 負擔額은 徵收額 기

表 3 農民의 農地稅 負擔推移(戶當)

	1971	1975	1977	1978	1979	79/75
農業所得(A)	291,909원	714,838	1,036,136	1,355,668	1,531,275	214.2%
農地稅負擔(B)	1,822원	8,760	15,601	19,927	27,963 ¹⁾	319.2
擔稅率(B/A)	0.62%	1.23	1.51	1.47	1.83	—
1人當擔稅額	309원	1,564	2,944	3,832	5,378	349.3
都賣物價指數 ²⁾	45.7	100.0	122.2	136.5	162.1	162.1

1) 推定値：1978년 農地稅 負擔額에 1975~78 平均 增加率(32.5%)을 적용하여 算出한 26,403원과 1978년 租稅公課金 中 農地稅의 比率(63.0%)을 적용하여 算出한 29,523원의 中央値임.

2) 1975 不變價格基準.

資料：內務部, 「地方財政年鑑」, 1979.

—, 「地方稅統計」, 1972~79.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0.

表 4 甲類 農地稅 負擔¹⁾ 推移

	1971	1975	1976	1977	1978	78/75
負擔額計	百萬원 3,734	17,525	27,515	30,352	36,804	% 210
戶當負擔額	1,504원	7,367	11,779	13,174	16,549	225
實質米價 ²⁾	1,757.0 (49.8)	19,500 (100.0)	18,575 (124.9)	17,784 (146.2)	15,781 (190.1)	81 —

1) 徵收額基準.

2) 1975년 不變價格基準：名目米價를 農家 구입가격수지로 deflate, ()는 농가구입가격지수임.

表 5 都農間 租稅公課金 負擔 推移

區分	年度別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都市勤勞者家口	所得(A)	532,800원	637,680	678,240	690,240	891,120	1,198,680	1,512,000	2,094,120	2,879,424
	租稅公課金(B)	26,760원	32,880	39,600	10,200	20,520	37,320	40,440	52,200	61,788
	負擔率(B/A)	5.02%	5.16	5.84	1.48	2.30	3.11	2.67	2.49	2.15
農家口	所得(C)	356,382원	429,394	480,711	674,451	872,933	1,156,254	1,432,809	1,884,194	2,227,483
	租稅公課金(D)	4,137원	4,282	6,399	8,720	12,687	19,540	26,723	31,590	46,862
	負擔率(D/C)	1.16%	1.00	1.33	1.29	1.45	1.69	1.87	1.68	2.10

資料：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1979.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80.

준으로 戶當 平均 1971년의 1,504원, 1975년의 7,367원에서 1978년에는 16,549원으로 늘어 1971~78년에 年平均 157%의 增加率을 보였고 1975~78년간 實質 增加率은 65%였다<表 4>.

나. 農民의 租稅公課金 負擔과 農地稅의 比重

1971년에 農民이 부담한 租稅 및 公課金은 戶當 平均 4,137원으로서 農家所得에 대한 租稅公課金 負擔率은 1.16%이었는데 이 比率은 계속 증가하여 1978년에 1.68%, 1979년에는 2.10%

에 달하였다. 이에 비하여 都市勤勞者 家口는 1971년(26,760원 : 5.02%) 이후 계속 減少하여 1978년에 2.49%, 1979년에는 2.15%까지 하락 함으로써 農家와 같은 比率에 접근하였다<表 5>.

이와 같은 租稅 및 公課金 負擔率의 都農間 접근은 언뜻 보아 衡平的인 것 같으나 兩者 間에 所得의 絶對額에 格차가 현저한 한 여전히 租稅 配分의 應能原則에 반하며 農民의 상대적 過負擔 要因은 殘存할 것이다.

租稅公課金 中 農地稅의 比重은 1971년에 44.1

表 6 都農間 可處分所得推移(家口當平均)

單位：千圓，%

	19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79/70
可處分所得											
都市 勤勞者 家口(A)	357.1	424.4	488.5	517.9	627.6	828.2	1,099.3	1,348.0	1,843.6	2,535.0	7.1倍
農 家 口*(B)	249.1 (42.9)	349.4 (58.9)	421.7	470.2	659.9	852.7	1,127.1	1,386.7	1,825.8	2,147 (426.9)	8.6倍 9.9倍
B/A (%)	69.7	82.3	86.3	90.8	105.1	103.0	102.5	102.9	99.0	84.7	—
所得中可處分所得比											
都 市 家 口	93.7	93.9	94.4	94.1	97.4	96.4	95.4	95.9	96.2	96.4	—
農 家 口	97.4	98.0	98.1	97.8	97.8	97.7	97.5	97.5	96.9	96.4	—

* ()는 1人當所得인.

資料：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1979.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80.

%이었으나, 1978년에 63.1%로 증가하였는 바,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農家の 農地稅 부담은 앞으로 1~2년 안에 租稅公課金 負擔額의 2/3수준을 上廻할 것이다.

2. 都農間 所得 및 可處分所得의 推移

農民의 所得水準은 前述한 바와 같이 급속히 향상되어, 한때 都市家口의 所得水準을 上廻하기도 하였으나(1974~77년 : 100.4%~104.7%) 家口員 1人當 所得은 여전히 都市에 뒤지고 있으며(1970~79년 : 60.5%~96.4%) 특히 1978년부터는 農家所得이 家口當으로서나 家口員 1人當으로서도 都市勤勞者에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農家の 可處分所得은 1979년에 家口當 2,148千圓, 1人當 427千圓으로서 1970년 對比 각각 8.6배, 9.9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所得 中 可處分所得의 比重은 계속 減少勢를 보였다(表 6). 이는 都市勤勞者 家口의 그것이 增加勢를 보여 온 것과는 反對現象으로서 都農間 實質所得 隔差의 要因이 되고 있으며 이 추세가 계속되면 都農間 隔差는 더 擴大될 것으로 보인다.

3. 農業補助金の 歸屬과 農民의 社會福祉

만일 農民에게 주어진 稅外的인 여건 즉 補助金 및 기타 社會福祉의 측면에서의 公共惠澤이 커서

앞에서 들어난 都農間 不衡平 要因이 補完될 수 있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農民에 베풀어진 農業補助金이나 社會福祉의 側面에서의 受惠度는 어떠한가.

가. 農業補助金

1) 大麥補助金

1970년대 중반 이후 보리栽培는 收益性이 낮고 水稻作과의 勞動力競合 등으로 인하여 農民은 보리栽培를 원치 않으면서도 國家의 主穀自給政策에 호응하여 生産을 계속해 왔으므로 糧特赤字 등을 통한 大麥補助金の 惠澤은 農民뿐 아니라 쌀 값으로 보리쌀을 購入해 온 消費者(都市勤勞者 등) 層에게도 동시에 귀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米穀補助金

지난 1973~79년에 米穀 政府收買價格의 平均上昇率(21.9%) 보다 米穀의 平均生産費 上昇率(23.6%)이 높았으며, 한편으로 米穀의 政府放出價格 上昇率(14.5%)이 消費者 物價 上昇率(15.6%) 보다 낮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米穀補助金の 惠택은 生産者인 農民보다 消費者인 都市勤勞者에게 더 많이 歸屬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⁵⁾.

3) 肥料補助金

① 벼 栽培農家の 경우 甲類 農地稅의 課標를 米穀의 粗收入基準으로 책정함으로써 肥料増投

에 의한 生産費 增加分에 대해서도 課稅되고 있기 때문에 甲類稅 負擔額 中 일부(肥料 增投分에 부과된 稅額만큼)는 肥料補助의 惠澤을 相殺시킬 것이다. ② 肥料補助金은 耕地規模에 비례하여 大農일수록 單位面積當 歸屬額이 증가하는 경향이므로⁶ 農業內部에서 상대적으로 小農에 不利한, 衡平阻害의 要因이 되어 왔다.

나. 農民의 社會福祉

醫療, 通信, 教育, 文化 및 기타 生活環境 등 農民의 社會福祉의 측면에서도 農民은 都市勤勞者에 비하여 不利하다. 예컨대 病院과 電話의 都農間 普及狀況을 비교해 보면, 1979년말 현재 病院은 大都市인 서울에서는 1,732명당 1個所, 中小都市인 報恩邑이 2,000명에 1個所 끝임에 비하여 農村인 瑞山郡은 4,237명에 1個所 끝이고, 電話도 서울이 10.3家口當 1臺, 報恩邑이 17.3家口當 1臺인에 비하여 瑞山郡은 39.1家口에 1臺의 比率로 分布되어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農民의 租稅公課金 부담, 補助金 및 기타 社會福祉의 公共惠澤 등의 農民不利性은 모두 「農民의 都市民에 대한 상대적 剝奪感」을 惹起시키고, 특히 直接稅인 農地稅 負擔의 不衡平性 등은 農民不滿의 직접적인 原因으로 제기되고 있다.

Ⅳ. 農民의 불만과 稅制上的 問題點

1. 農地稅 부담에 관한 農民의 不滿要因

郵便調查를 통하여 나타난 農地稅 負擔에 관한 農民의 불만은 다음과 같이 集約된다.

가. 不滿調查의 背景과 調查結果의 要旨

1) 調查의 背景

이 調查는 全國(서울과 釜山을 제외한 全國 各道, 各郡) 農村에 걸쳐 前·現職의 里長, 새마을指導者, 4-H 指導者, 開發委員, 興農契長, 總代 등 각 마을에서 社會, 經濟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家口主의 教育水準도 농촌의 平均수준을 上廻하는 농가 2,464戶를 有意選定, 耕地規模別로 구분하여 郵便調查를 실시하였는 바 (1980. 9월~10월), 標本農家의 有意選定으로 인하여 調查結果의 全 階層 農家에 대한 代表性은 다소 낮을 것이나, 높은 應答率과 調查表 記載上的 정확성 등을 감안하면 調查結果의 信賴度는 상당히 높을 것이다.

2) 調查結果의 要旨

가) 調查對象 農家 2,464戶 中 應答者 總數는 2,065名으로 84%의 回收率을 보였으며, 應答者 中 農地稅를 내는 農家は 87%(1,788戶), 그 中 甲類 農地稅를 내는 農家가 86.4%(1,544戶), 乙類 農地稅를 내는 農家가 49.6%(886戶)였으며, 甲乙類稅 둘 다 내는 農家도 36%(642戶)나 되었다<表 7>.

나) 耕地規模別로는 甲類稅는 規模가 커질수록 負擔者數가 늘고, 乙類稅는 반대로 耕地規模가 커질수록 그 比率이 줄고 있다.

다) 農地稅를 납부하는 1,802명 中 稅負擔이 過重하다고 느끼고 있는 者가 26.9%(484명)이었고, 農地稅賦課가 不公平하다는 의견이 63.8%(1,150명)이었는데 그중 0.5~1.0ha 規模 農家가 34%로 가장 많았다.

라) 자신에게 부과된 農地稅의 適正與否에 대해서 항상 확인하는 者가 28%(503戶)였고, 21%(377戶)가 확인을 않고 있다. 특히 확인을 않는 農家 中 54%(204戶)는 確認方法을 몰라서 확인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부과된 農地稅가 不公平·不適正하다고 판

表 7 甲·乙類 農地稅別 納付農家의 比率

	調査者數 (A)	應答者數 (B)	農地稅納付者數					甲類稅納付者 (G=D+F)	乙類稅納付者 (H=E+F)
			(C=D+E+F)	甲類稅만(D)	乙類稅만(E)	甲乙稅 모두(F)			
農家數(戶)	2,464	2,078	1,802	904	251	647	1,551	898	
比 B/A	100.0	84.3	—	—	—	—	—	—	
率 C/B	—	100.0	86.7	43.5	12.1	31.1	74.6	43.2	
(%) D/C	—	—	100.0	50.2	13.9	35.9	86.1	49.8	

資料：郵便調査結果(1980. 9월~10월), 當研究院農政輿論調査室.

단될 때 異議申請을 하는 者는 10.4%(187명)에 불과하며, 農民이 一次的으로 상담하는 대상은 面職員(57.4%)과 里長(16.6%)이었다. 이유를 불문하고 異議申請을 않고 “그냥참는다”는 農家도 7.9%(143戶)나 되었다.

바) 甲類農地稅의 납부방법에 있어서 物納과 金納制를 併用하자는 의견이 69.1%로 절대 다수였으며, 現金으로만 納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9.4%(現物로는 19.9%)나 되었다.

나. 調査結果에 나타난 農民의 不滿要因 農民의 不滿要因이 될 것으로 가정하고 調査한 設問別 應答內容 中 특기할 사항만 要約하면 ① 農地稅 負擔이 過重하고(26.9%), ② 農地稅 賦課가 不公平하며(63.8%), ③ 稅金計算方法이 복잡하여 확인이 어렵고, ④ 申請의 절차가 복잡하여 異議하기가 힘들며, ⑤ 甲類稅를 現物로만 納付하게 되어 불편하고 불리하다는 것 등이다.

다. 沒理解에 의한 불만

調査結果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자신에게 부과된 稅額이 타인에 비하여 많고 적음을 모르거나 무관심한 자가 9.8%, 부과된 稅額이 公平한가에 관해서도 모르거나 무관심한 자가 6.9%, 稅金賦課가 公平·適正한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는 者가 11.3%, 不公平한 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異議申請을 아니하고 그냥 참는다는 農家도 7.9%(143)나 되었다

는 점 등으로 보아 農地稅에 관한 農民의 無知·沒理解에서 야기되는 불만의 가능성도 排除할 수 없을 것 같다.

2. 農地稅制上的 問題點

현행 稅法에 의거 賦課·徵收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矛盾 내지 不合理性과, 직접 農民調査를 통한 上記 不滿要因 등을 함께 分析한 結果, 현 農地稅制가 지니고 있는 問題點은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다.

가. 甲類 農地稅에 관하여

1) 벼의 段收變化(減少)에 逆行하는 課標額의 引上: 米穀의 平均 段收는 감소하는 데도 農地의 課標等級(平均課標; 稅金을 賦課기 위하여 정한 農地의 (100坪當) 基準收穫量)⁷⁾을 引上함으로써 農民의 實質的 稅負擔을 二重으로 加重시켜 왔다. 1979년의 平均課標는 105kg 으로서 실제 쌀 100坪當 收量 151kg 對比 69.5%였는 바 이것은 1977년의 55%, 1978년의 62.0%보다 현저히 높은 比率이다(表 8).

2) 稅金納付 形態는 物納制인데 基礎控除는 金額으로 査定함으로써 야기되는 實質免稅點의 低位性: 금액으로 고정해 놓은 甲類 農地稅 基礎控除額은 政府收買價格의 인상에 따라 실질 物量 基準으로는 계속 감소해 왔다. 1977년 法定 基礎控除額은 443千원 으로서 物量을 기준으로 한 실질 免稅點은 벼 35.1畝/54kg 이었음에 비하여

表 8 甲類 農地稅의 平均 課標와 畓 段收推移

	1977	78	79	79/77
農地의 平均等級	23등급	24등급	25등급	..
平均 課標				
100坪當(畓)	130kg	140	150	115.4%
100坪當(畓)	91kg	98	105	
10a當 畓(A)	273kg	294	315	
畓 平均收量				
10a當(B)	494kg	474	453	91.7%
100坪當	164.7kg	158kg	151kg	
A/B	55.3%	62.0%	69.5%	

資料：農水產部，內務部.

1979년 改正 免稅點 740千원은 物量으로 41.6畓/54kg 가 되어 1977~79년 사이에 名目上 基礎控除額은 67% 인상되었어도 實質(物量) 基礎控除額은 18.5%의 引上에 불과하다, 여기에 同期間의 農地의 基準收穫量 等級引上으로 인한 單位面積當(10a當) 課標引上率 15.4%을 勘案하면 (18.5%~15.4%=3.1%), 1977~79년간의 基礎控除額 上向調整은 農民의 農地稅 負擔 輕減에 거의 기여치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表 9>. 따라서 최소한 穀價上昇에 의한 실질 免稅點 引下 效果만이라도 보충하려면 甲類 農地稅의 基礎控除額은 物量으로 책정해야 할 것이다.

3) 基礎控除額(免稅點)이 절대적,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 現行 甲類 農地稅의 基礎控除額(740千원)은, 가) 農家 平均家計費(1979: 1,662,168千원)의 44.5%에 불과하여 家計費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절대적으로 낮은 水準이며(都市勤勞者의 경우는 87.9%임), 나) 綜合所得稅의 基礎控除額 1,860千원의 39.8%에 불과하여 都市勤勞

表 9 甲類 農地稅의 基礎控除額 推移

	1977	78	79	79/77
名目基礎控除額(千원)	443	543	740	167.0%
實質基礎控除額(畓/54kg)	35.06	37.24	41.60	118.7%
農地의 基準收穫量(畓/100坪)	130	140	150	115.4%

資料：農水產部，內務部.

表 10 都農間 基礎控除額 比較

	基準	1977	78	79	79/78
農地稅(A)		549千원	868千원	960千원	139.9%
甲類稅(B) 粗收入		443	530	740	139.6
乙類稅 所得		106	156	220	141.0
綜合所得稅(C) 所得		1,200	1,560	1,860	119.2
A/C (%)	—	45.8%	44.0	51.6	—
B/C (%)	—	36.9%	34.0	39.8	—

者의 免稅惠澤보다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다<表 10>.

4) 稅率이 綜合所得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 일반적으로 稅額을 決定하는 要因은 稅率以外에 後述하는 바와 같이 여러 要因이 있으므로 農地稅의 稅率이 높다는 것 한가지만으로는 稅負擔의 輕重 問題를 단정할 수 없다. 다만 稅率만을 都農間에 比較하면 農地稅가 綜合所得稅에 비하여 相對적으로 높다. <表 11>에 서와 같이 課標 3,000千원 이하 범위에서는 農地稅의 稅率이 현저히 높으며, 더욱 問題가 되는 것은 課標 3,000千원 미만의 農家는 米穀粗收入 3,740千원인 農家에 해당하므로 1979년 戶當 米穀粗收入을 기준으로 볼 때 경지규모 2.0ha(米穀粗收入 2,121,957千원) 이하의 農家, 즉 全體 農家의 90.8% 이상에 이르는 대부분의 農家가 이와 같은 높은 稅率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5) 同一稅率을 적용하는 課標의 間격이 너무 좁고, 課標階層(段階)의 數가 너무 적다: 農地稅의 現行 課標間隔은, 가) 最下位 단계가 150千원

表 11 農地稅와 綜合所得稅의 稅率比較

種別	課標稅		綜合所得稅
	農地稅 甲類	乙類	
150千원 以下	6%	10%	6%
150千원超過~300千원未滿	8	15	6
300千원 // ~1,200千원 //	10	20	6
1,200千원 // ~3,000千원 //	10	20	8~12
3,000千원 // ~3,600千원 //	10	20	12~15

表 12 農地稅와 綜合所得稅의 稅率構造

區 分 課標階層	農 地 稅		綜 合 所 得 稅		
	稅 率		課標間隔	稅 率	課標間隔
	甲 類	乙 類			
150千원 以下	6%	10%	150千원*	} 6%	} 1,200千원*
150千원 超過~300千원 未滿	8	15	150千원		
300千원 ~1,200千원	10	20	無制限		
1,200千원 ~1,800千원	"	"		8	} 600千원
1,800千원 ~2,400千원	"	"		10	
2,400千원 ~3,000千원	"	"		12	
3,000千원 ~3,600千원	"	"		15	
3,600千원 ~4,500千원	"	"		18	
4,500千원 ~5,000千원	"	"		21	} 900千원
5,400千원 ~6,000千원	"	"		24	
6,900千원 ~8,440千원	"	"		28	} 1,500千원

* 最下位課標間隔.

으로서 綜合所得稅(1,200千원)보다 현저히 좁으며, 나) 150千원 이상의 課標에 대해서는 150千원 간격으로 한 階層만 두고(150千원~300千원), 다) 그 이상의 課標에 대해서는 第3의 段階로서 무제한으로 單一稅率을 적용케 되어 있는 바, 最下位 單位를 1,200千원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600千원, 900千원, 1,500千원 등 遞增의 간격으로 多段化(17段階)되어 있는 綜合所得稅보다 稅率 間隔이 현저히 좁고 階層數도 적다(表 12). 이는 階層 間의 貧益貧 富益富 현상을 촉진하여 都農 間 및 大小農 間의 不衡平性을 加重시키고 있다.

6) 稅額算出方法이나 納付方法이 복잡하고 非經濟的이다: 가) 現物納인 甲類 農地稅의 基礎控除額을 金額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稅額計算이 더 복잡하고, 나) 甲類 稅納付는 現物로만 하게 되어 있어⁸⁾, 包裝費, 運搬費 및 檢査手數料 등 農民의 追加負擔을 요하고 있다⁹⁾. 전기 輿論調查結果 甲類 農地稅를 納付하는 1,551農家中 19.9%가 現物納制를, 69.1%가 現金·現物納 併用制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와 같은 이유인 것으로 볼 수 있다.

7) 甲類 農地稅의 課標을 粗收入基準으로 책정하는 데에서 오는 問題點: 農地稅가 遞次的 超過累進稅임은 II章3節에서 고찰한 바와 같다. 그러나 累進稅率(制)은 원래 擔稅者의 실질적 利益金額에 대하여 적용하되 高所得者에게는 高稅, 低所得者에게는 상대적으로 低稅 稅金을 부담시킨다는 原則에 이론적 根據를 두고 있으므로, 所得額에 經營費와 生産費까지 포함된 粗收入을 課標로 책정하여 稅金을 부과하는 것은 그 根本原理에 어긋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增產을 위해 投入된 生産費등에 대해서까지 累進率을 적용하여 課稅하는 것은 그 만큼 增產意慾의 沮害要因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1950년대 이전에는 農地(當時는 土地)의 賃貸價格을 課標로 하던 것을 1950년 12월 租稅臨時增收法의 制定과 동시에 당시 戰爭被害가 가장 적었던 農村에서의 稅收確保를 위하여 地稅法을 개정, 課標를 “土地收益”으로 轉換하고 增稅를 도모하던 데서부터 粗收入이 課標로 된 것이므로, 이제 都市(都市勤勞者)보다도 오히려 農村(農民)이 더 保護를 받아야 할 現段階에서는 마땅히 甲類 農地稅의 課標는 粗收入이 아니라 所得額으로 책정하

여야 할 것이다.

나. 乙類 農地稅에 관하여

基礎控除額, 稅率構造, 稅額算出方法 등에 관한 甲類 農地稅의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그밖에 지적할 사항은,

1) 課標決定上的 問題點: 가) 市郡에서 실시하는 수확량 조사방법은 目測調査 등에 의하고 있는 바 調査者가 非專門家인 점에서 오는 收穫量評價上的 錯誤가 많으며, 나) 稅額算出에 적용하는 基準時價가 너무 높고 地域別, 品種別 및 時期別 價格差를 무시한 劃一的 價格適用 때문에 擔稅農民의 불만이 높다.

2) 甲類農地稅보다도 불리한 稅率과 基礎控除額: 同一課標에 대한 稅率이 甲類 農地稅보다 平均 4~10% 정도 높을 뿐 아니라 基礎控除額도 乙類稅는 甲類稅의 30%水準에 불과한 바, 전기 郵便調査結果에서 農地稅賦課에 대한 異議申請 내지 不公平에도 “그냥 참는다”는 農家의 比率이 甲類보다 乙類에 더 높았다는 事實은(甲類 7.5% : 乙類 11.6%) 이로 인한 甲乙類間 不滿意度의 隔差로 풀이된다.

V. 問題點 改善方向

1. 改善을 위한 基本的 問題點別 方向

가. 基本方向

1) 農民의 稅負擔 輕減優先: 農民의 農地稅負擔은 地方財政의 확보와 農民負擔 합리화(衡平·應能負擔 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調整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前述한 問題點에서 지적된 理由로 말미암아 <表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農民의 農地稅 負擔은 절대적, 상대적으로 過重하므로 一次的으로 農民의 負擔을 輕減하는 데에 우선해야 한다.

2) 負擔의 輕減과 衡平을 함께 摸索: 農民의 可處分所得을 늘리고 불만을 해소키 위하여 農地稅 負擔의 輕減과 衡平化를 동시에 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衡平化는 都農間, 大小農間 및 甲乙類稅 對象作物 栽培農家間에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3) 農地稅 賦課와 관련한 對農民 啓蒙과 指導: 農地稅 負擔에 관한 農民의 불만을 해소하고 稅制運營의 效率化를 위하여 실재하는 問題點,

表 13 都農間 및 甲乙類農地稅間 稅負擔額 比較

擔稅額	綜合所得稅		甲類農地稅 ¹⁾		乙類農地稅 ¹⁾	
	綜合所得額	擔稅率 ²⁾	米穀粗收入額	擔稅率 ²⁾	米穀·고추所得額	擔稅率 ²⁾
5,000원	1,943,000원	0.3%	823,000원 (598,300)	016%	160,000원	3.1%
10,000	2,027,000	0.5	865,000 (628,900)	1.2	210,000	4.8
60,000	2,860,000	2.1	1,340,000 (974,100)	4.5	410,000	14.6
100,000	3,110,000	3.2	1,740,000 (1,265,000)	5.7	610,000	16.4
150,000	3,360,000	4.5	2,240,000 (1,628,500)	6.7	860,000	17.4
200,000	2,860,000	5.2	2,740,000 (1,992,000)	7.3	1,110,000	18.0

() 내 數値는 米穀所得임 (1977년 米穀所得率 72.7%)

- 1) 乙類農地稅는 所得金額이 220千원을 超過하는 경우는 年(2期)間 基礎控除額 220千원을 적용하고, 220千원 미만의 경우는 1期 基礎控除額 100千원을 적용하여 稅額을 算出하였음.
- 2) 여기서 擔稅率은 稅法上的 法定 稅率과는 상이한 개념임.

沒理解와 무지에 의한 불만도 해결토록 啓蒙과 指導도 併行하여야 한다.

나. 주요 問題點別 改善方向

1) 農地稅 課標決定의 合理化

가) 甲類農地稅의 課稅標準을 現행의 “粗收入”에서 “所得金額”으로 轉換: 農民의 稅負擔을 덜기 위해서는 課標以外에 稅率, 基礎控除額 등의 調整에 의해서도 可能하나, Ⅳ章 2節 가項 7)에서 지적된 理由에 의하여 課標를 乙類 農地稅나 綜合所得稅의 경우와 같이 所得金額으로 査定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나) 甲類 農地稅의 課標決定을 農地의 平均段收 連動制로 轉換: 前章(Ⅳ-2-가-1)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지난 3년동안(1977~79) 벼의 平均段收는 減少하였음에도 課稅에 요하는 100坪 當 基準 收穫量(平均課標)은 매년 7%이상 引上되어 課稅應能의 原則에 위배될 뿐 아니라 農民 過負擔을 초래하였으므로 課標를 平均段收에 連動的으로 결정해야 한다.

2) 稅率構造의 再編成

가) 農地稅의 稅率을 引下: 前章(Ⅳ-2-가-4)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現행 農地稅의 稅率은 課標 3,000千원 미만의 범위내에서 綜合所得稅의 稅率보다 現저히 높고 대부분의 農家(경지규모 2.0ha 以內: 90.8%)는 이 높은 稅率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引下해야 한다.

나) 課標間隔의 擴大와 課標階層의 細分·多段化: 前章(Ⅳ-2-가-5)에서 分析, 檢討한 바와 같이 現행 農地稅의 累進稅率을 적용하는 課標 間隔이 過狹하고 그 階層數가 적기 때문에 貧益 貧 富益富 現상을 擴大시켜 왔다. 즉 現행 課標 間隔 150千원은 1974년 12월 27일(法律 第2743 號)改正, 1975년 1월부터 施行되어 온 것으로 서 그 당시는 實物로 15.8畝/54kg 이었으나 19

79년에는 8.4畝/54kg으로 줄어서 46.8%나 縮少된 셈이다. 이와 같은 課標의 實質間隔 縮少는 都農間 및 大小農 間의 課稅 不衡平 要因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를 緩和·解消키 위하여는,

(1) 農地稅課標의 最下位 單位를 最少限 324千원¹⁰이상 수준으로 引上하고 最下位 單位를 초과하는 課標에 있어서도 現행 150千원 均一 間隔에서 遞增的으로 예컨대 350千원, 400千원, 500千원 등으로 擴大하여야 하며, (2) 課標의 階層數도 現행 3段階에서 最小限 3,000千원 以內에서 7~8段階 정도로 課標를 細分·多段化하여야 한다(表 14).

表 14 農地稅, 課標再調整案(甲類農地稅)

	課標段階(階層)		課標間隔	
	改正(案)	現 行	改正(案)	現行
基礎控除	?	740千원	?	740千원
1段階(最下位)	350千원	150千원	350千원	150千원
2段階	350~700千원	150~300千원	350千원	150千원
3 "	700~1,100千원	無制限	400千	無制限
4 "	1,100~1,500千원		400千	
5 "	1,500~2,000千원		500千	
6 "	2,000~2,500千원		500千	
7 "	2,500~3,100千원		600千	
8 "	3,100~3,700千원		600千	
9 "	3,700~4,400千원	700千		

3) 基礎控除額(免稅點)의 再調整

農地稅의 基礎控除額이 너무 낮은은 前章에서 지적된 바와 같으며, 특히 序頭에서 밝힌바 稅負擔의 衡平化를 통한 中小農 保護의 취지에서 農地稅의 基礎控除額은 引上하는 方向으로 再調整되어야 할 것이다.

2. 甲類 農地稅의 基礎控除額 引上代案

가. 引上의 理由와 先行要件

1) 引上을 요하는 구체적 理由: 가) 甲類 農地稅의 現행 基礎控除額(740千원)은 이미 前年比 40%나 引上되었는 데도 綜合所得稅 基礎控除

(1,860千원)¹¹의 40%에 불과하며, 나) 綜合所得稅 基礎控除額은 都市勤勞者家口の 平均家計費의 92% 수준임에 비하여 甲類 農地稅 基礎控除額은 農家平均 家計費의 45%¹²에 불과하고, 다) 控除對象도 綜合所得稅는 都市家口の 75% (80년) 水準임에 비하여 甲類農地稅는 55%에 불과하며, 라) 그밖에 物納制인 甲類農地稅의 基礎控除額을 金額으로 책정하는데서 오는 實質免稅點 引上效果의 상대적 低位性(Ⅳ-2-가-2)) 등은 基礎控除額 引上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2) 基礎控除額 引上을 위한 先行要件: 가) 農地稅이면서 課標, 稅率, 基礎控除 및 納付方法 등이 상이한 甲類稅와 乙類稅의 課稅 衡平化를 위해 양자의 基礎控除額을 여하히 조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나) 甲類 農地稅의 基礎控除額을 金額으로 할 것인가, 物量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겠으나, 前者에 관해서는 乙類稅의 基礎控除額이 甲類稅 基礎控除額에 따라 調整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分析課題로 미루기도 하고, 後者에 관해서만 현재 甲類稅의 基礎控除額을 金額으로 책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金額으로 정하는 경우와 物量으로 정하는 경우 등 양 경우의 몇가지 代案別 調整案을 모색해 본다.

3) 代案別 基礎控除額 調整

현행 稅法上 甲類農地稅의 基礎控除額은 金額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地方稅法 第212條 1項), 物量基準 策定方法으로 전환할 경우라도 그 經過期間을 요할 것임을 감안, 物量과 金額의 두가지 基準別로, 가) 農地의 平均段收, 나) 農業收入과 米穀收入, 다) 農地의 平均等級(基準收穫量等級), 라) 米穀의 政府收買價格과 農家購入價格, 마) 農家所得과 都市家口所得, 바) 農家家計費와 都市勤勞者 家計費 등의 關聯變數를 적용한 代案別 基礎控除額 算式은 다음과 같

다.

가) 金額으로 책정하는 경우

(1) 代案 1(綜合所得稅의 基礎控除額을 主要 基準으로 할때):

$$\text{甲類 農地稅 基礎控除額(以下 基礎控除額)} = \text{綜合所得稅 基礎控除額} \times \frac{\text{米穀收入}}{\text{農業收入}} \times (1 - \text{米穀平均段收變動率}) \dots\dots\dots (1)$$

(2) 代案 2(農家の 家계비를 主要 基準으로 할때):

$$\text{基礎控除額} = \text{前年度 農家家計費} \times \frac{\text{米穀收入}}{\text{農業收入}} \times (1 - \text{米穀平均段收變動率}) \dots\dots\dots (2)$$

(3) 代案 3(1977년 甲類農地稅 基礎控除額을 主要 基準으로 할때):

$$\text{基礎控除額} = 1977\text{년 甲類 農地稅 基礎控除額} \times \text{平均課標引上率} \times (1 - \text{米穀平均段收變動率}) \times \frac{\text{都市家口所得}}{\text{農家所得}} \times \text{米穀生産費增加率} \times \text{米穀收買價格引上率} \dots\dots\dots (3)$$

나) 物量으로 책정하는 경우

(1) 代案 4(1977년 實質 基礎控除額(物量)을 主要 基準으로 할때):

$$\text{基礎控除額} = 1977\text{년 甲類 農地稅 基礎控除額(物量)} \times \text{平均課標引上率} \times (1 - \text{米穀平均段收變動率}) \times \frac{\text{都市家口所得增加分(77~79)}}{\text{農家所得增加分(77~79)}} \dots (4)$$

(2) 代案 5(1975년 基礎控除額(物量)을 主要 基準으로 할때):

$$\text{基礎控除額} = 1975\text{년 基礎控除額(物量)} \times \text{農家購入價格上昇率} \times \frac{\text{都市家口所得增加}}{\text{農家所得增加分}} \times \frac{\text{都市家家計費增加分}}{\text{計費增加分}} \dots\dots\dots (5)$$

그러나 위의 代案別 基礎控除額 算式에는 현재 都市勤勞者에게 부여되고 있는 賞與金控除(현 520千원), 保險料控除(240千원), 醫療費控除(240千원) 및 기타 障害者控除, 學資金控除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점, 綜合所得稅가 所得人員別 控除制임에 비하여 農地稅는 家口別 控除制인

점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므로 앞으로 都農間 衡平化를 위한 改善의 여지는 남아 있다.

3. 農地稅負擔에 관련된 기타 問題點 改善 方向

지금까지 本稿는 農民의 農地稅 負擔에 관한 現況과 주요 問題點을 分析하고 그 改善方向을 찾아 보았으며, 그 중에도 특히 甲類 農地稅의 基礎控除額 引上(再調整)을 위한 代案을 모색해 보았다. 그러나 分析·檢討過程에서 農民의 農地稅 負擔과 관련되면서도 아직 깊이 分析되지 아니한 農地稅 이외의 懸案問題중 다음 3가지는 앞으로 農民의 農地稅 負擔 輕減方案과 더불어 계속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가. 農地稅 輕減으로 인한 地方財政의 稅收減少分이 다시 農民負擔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는 문제 : 前述한 바와 같이 基礎控除額의 引上이나 기타 稅率 및 課標 등의 調整을 통하여 農民의 農地稅 부담이 輕減되면 그 만큼 地方財政의 稅收缺陷을 초래하는 바, 이때 만일 어떤 다른 형태로 다시 農民負擔으로 되돌아 오게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경험을 통하여, 즉 1977~79년에 農民의 稅負擔을 줄이기 위하여 免稅點을 引上하면서, 한편으로는 平均課標(100 坪當 基準收穫量)를 동시에 引上함으로써 免稅點 引上效果가 相殺된 事實에서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農地稅 輕減에 의한 地方財政의 稅收減少分 충당을 위해서는 農民(農村)으로부터의 新稅源開發 보다 中央政府로부터의 地方稅 交付率을 증대시키는 방향을 取해야 할 것이다.

나. 農地稅와 綜合所得稅 등의 調整을 위한 行政體系가 확립되지 못한데서 오는 문제 : 現行 租稅行政體系上 綜合所得稅는 財務部, 農地稅는

內務部의 所管事項이다. 그러므로 農民의 農地稅 負擔에 관한 農水產部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農地稅의 綜合所得稅에 대한 比較調整은 非效果의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農地稅의 賦課·收納 등 關聯事項은 農業과 農民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擔稅上 都農間 衡平을 기하기 위하여 內務, 財務, 農水產部 등 3部 共同審議機構를 構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立法過程에서도 이 문제는 財務委, 內務委 및 農水產委員會가 함께 審議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 油類稅와 農組費(水稅)負擔의 過重에서 오는 問題 : 農地稅 輕減分이 다른 형태의 農民負擔으로 轉換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다. 그러나 기존의 諸稅公課金중에도 農民負擔을 크게 늘리고 農業發展에 逆機能의인 것이 있다. 農業機械用 油類에 대한 特別消費稅 및 附加價値稅의 賦課가 農業機械化의 阻害要因이 되고 있으며, 農組會員 農家の 비교적 높은 水稅負擔의 過多性이 農家の 可處分所得 減少의 主要因의 하나라는 점 등이 그 代表的 예이다. 특히 後者の 경우는 보통 灌溉面積 10a當 벼 20~30kg (貯水地區의 경우) 또는 40~50kg(揚水地區의 경우)을 組合費의 形式으로 負擔하고 있는데, 이는 灌溉面積(耕地面積) 1.0~1.5ha 農家 기준 으로 戶當 5.3~10.4 噸/54kg(4.6~6.0 噸 또는 8.3~12.5 噸)의 부담으로서, 1.5ha 農家の 甲類 農地稅額(平均生産量기준) 7.8 噸/54kg과 거의 같은 負擔이다. 따라서 農民負擔 輕減을 위하여 此의 再調整 方案도 아울러 講究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註 1. 1960년대 「보리고개」가 계속되어 오던 때의 所得水準.
2. 農地稅가 農民의 可處分所得 決定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關係式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즉,
 $Dy_i = Y_i - (T_i + Ta) + S_i$, (단, Dy_i 는 可處分所得, T_i , Ta 는 각각 一般租稅公課金과 農地稅, S_i 는 補助金임), KDI, 朱鶴中外, 「韓國의 所得分配과 決定要因(上)」, p. 183 參照.
3. 現行 稅法上 地方稅에 속해 있는 農地稅는 舊韓末(1896년) 이후 日政下(1926년), 光復直後(1945. 8월) 및 大韓民國政府樹立(1948)을 거쳐 1961년 초에 이르기까지 「地稅→土地收得稅→臨時土地收得稅」의 형태로 國稅에 속해 있었으나, 1961년 12월 稅制改革에 의하여 國稅인 土地稅 중 農地에 대한 部門이 農地稅란 名稱으로 地方稅에 編入되었음.
4. 金俊輔, 「韓國經濟와 貨金構造」, 1979, p. 102 참조.
5.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轉換期の 韓國農業」, 1979, p. 140 참조.
6. K.D.I., 「韓國의 所得分配과 決定要因(上)」, 1979, p. 210-211 참조.
7. 基準收穫量이라 함은 벼를 耕作하는 農地를 100坪當으로 구분하여, 그 農地의 肥沃度, 水利施設 등에 따라 平年作의 경우 얼마나 生産되는가를 미리 定해 놓은 等級別 收穫量을 말함.
8. 단, 1975년부터 「農地稅徵收特別措置法」에 의하여 大田市 등 6大都市(서울, 釜山, 大邱, 大田, 光州, 仁川)에 한하여 現金으로 徵收토록 되어 있음.
9. 1980년 초 政府收買에 요하는 벼 1㏊/54kg當 費用은 운반비 100원, 가마니 값 320원, 새끼 값 45원, 김사수수

- 료 6원 등 모두 471원이었음 (1980년 6월 金提, 利川地域의 例).
10. 1975년 決定當時의 課稅間隔 150千원을 1975년 (=100) 基準 農家購入價格指數(216. 2)로 deflate 하여 算出된 324, 300원에 根據를 둠.
11. 5人家族 基準 勤勞所得控除 540千원, 基礎控除 300千원 配偶者控除 300千원, 扶養家族控除 720千원 (5人家族基準으로 扶養家族 1人當 240千원×3人=720千원)의 合計額임.
12. 1979년 農家戶當(全國平均) 家計費 1, 662, 168원 基準.

參 考 文 獻

- 金東熙 外, 「轉換期の 韓國農業」,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79.
- 金雄俊 外, 「農業稅制에 관한 研究」,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6.
- 金俊輔, 「韓國經濟와 貨金構造」, 1979.
-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1979.
- , 「主要經濟指標」, 1980.
- 內務部, 「地方財政」, 1975. 1~1980. 12.
-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80.
- , 「農林統計年報」, 1980.
- 財務部, 「韓國稅制史」, 1977.
- 全國經濟人聯合會, 「新稅制의 內容과 問題點」, 1975.
- 鄭煥淡, 「韓國稅制上の 問題點과 改善方向」, 全南大 社會科學研究所, 1977.
- 車耕權, 「租稅概論」, 1971.